

# 특별공급 청약 체크리스트

## 유의사항

-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가능하며,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 
(신혼부부 특별공급,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)
-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(청약홈)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.
- 특별공급 중복신청을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

## 특별공급 유형별 체크사항

구분	내용
기관추천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 거주자(장기복무 군인 제외) ②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(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) ③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
다자녀가구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 거주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3명(태아 포함) 이상을 둔 자
노부모부양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 거주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자
신혼부부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 거주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인 자 ④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자 단,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.12.11.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
생애최초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 거주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③ 생애최초(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)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입양을 포함, 혼인중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)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,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,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,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⑥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·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